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5. 3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민 정 기 (서명)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목 차

	Page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다. 관련 규정	4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5
나. 구성(이사)	9
다. 활동내역	15
라. 평가	22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23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24
다. 구성	24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5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26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29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30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31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31
4. 대표이사 경영승계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31
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36
다.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39
라. 대표이사 자격충족 여부	39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41
바.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42
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용 현황	42

	Page
5.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43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44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45
라. 대표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48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50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53
다. 활동 내역 및 평가	54
라. 감사보조조직	57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57
나. 구성(보상위원회 위원)	58
다.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59
라. 보상 체계의 주요 특성	62
마.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62
8. 위험관리위원회	64
9.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64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66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66
라. 기부금 등 지원내역	66
마.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67
바. 사외이사 평가	68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69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70
10. 주주총회	
가. 주주현황	71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71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 계획	75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76

첨부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정관

첨부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규정

첨부3.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감사위원회규정

첨부4.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4 년말 현재는 이사회의 67%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ㅋㄹ 1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14 년 말 현재 이사회는 당사 지분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재무팀 상무, 미래전략연구소 상무, 당사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BNPP IP 의 이머징 마켓 대표, 아시아지역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 운영 중)하여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회사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http://www.shbnppam.com) 또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2015 년 3 월 2 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시행에 따라 정관, 이사회 규정 등 관련 규정 일체를 정비하였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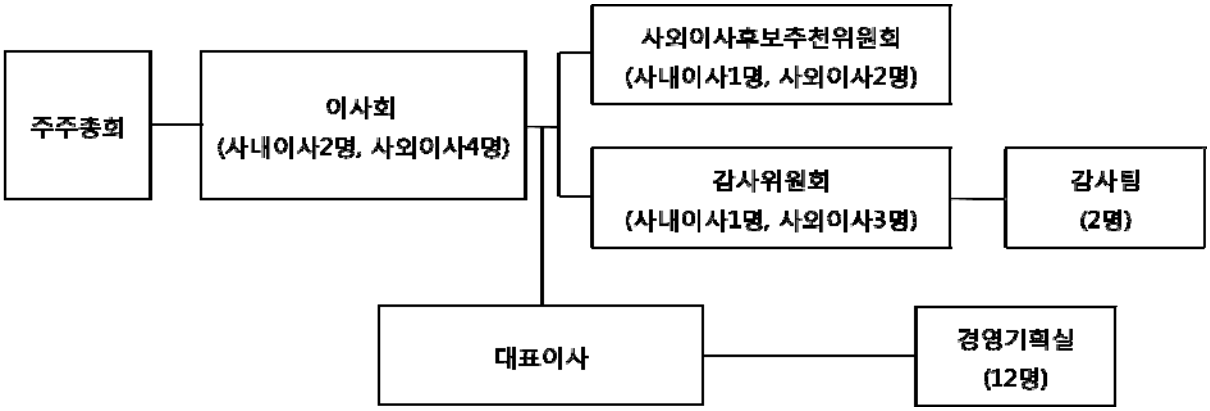

※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보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지배구조의 특징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4 명. 67%로 타 금융회사에 비해 높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주주 추천 및 기타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2 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상위원회 규정을 신설 제정하였으며, 이후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최고경영자 후보는 신한금융지주에서 설치 · 운영 중인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됩니다. (본 연차보고서에서 별도의 수식이 없어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지칭합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의결기구	4/6	조용병/상임	정관§31 이사회규정§5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2/3	조용병/상임	정관§32 사추위규정§3
감사위원회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3/4	임병철/사외	정관§32 감사위원회규정§4

다. 관련 규정

첨부 1.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정관

첨부 2.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규정

첨부 3.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감사위원회규정

첨부 4.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서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사회규정 제 5 조, 제 13 조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도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 · 전략의 수립 및 평가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 · 전략을 수립 · 평가합니다(정관§21, 이사회규정 §13). 이에 따라 '15 년 경영목표 · 전략은 '14. 12 월에 개최된 14 년도 제 19 기제 7 차 정기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15 년 경영목표 · 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2015 년도 경영전략의 주요 방향(실천하는 신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여 2014 년도 그룹 6 대 전략방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하는 것을 경영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정함. 그룹의 6 대 전략방향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실행력 강화,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금융, 미래설계 차별적 역량강화, 글로벌 현지화 강화 및 진출 다양화, 고객중심 채널운영체계 구축,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전략적 비용절감 입니다.)과 함께 '종합자산운용사로서 고객 투자솔루션 제공' 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redibility, Competence, Creation 이라는 3 대 실천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15.7 월 경에 '15 년 경영목표.전략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정관 변경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 · 의결합니다. (이사회규정 §13)

2014 년도에는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규 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정관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 · 의결하며 주요한 예산(이사회규정 §13)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합니다.

13 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14 년 1 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외부 감사인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 했으며, 14 년 3 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2 월 임시이사회(14 년도 제 19 기제 1 차 임시이사회)에서 2013 년 제 18 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를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라)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조직에 관한 기본 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점포의 이전 및 폐쇄, 자본시장법상의 신규 사업에의 진출 등 경영 일반 사항에 대해 심의 · 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13)

이에 따라 14 년 제 19 기제 7 차 정기 이사회에서 조직편제 개편의 건을 심사 ·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15 년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개편에 대한 상세 변동, 업무 분장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마)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 · 평가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2014 년 1 년간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부의 건 등을 승인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신설 제정하여 추후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을 위하여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의 기준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대주주 · 임원 등과의 거래 등에서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검토 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년 제 19 기제 5 차, 제 6 차 이사회 등을 통해 전산센터 이전에 따라 계열사인 신한은행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등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사전 승인 바 있습니다.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 · 평가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8 조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으로 정하고,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 · 통제를 함으로써 회사 내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13)

2014 년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은 없었으나 내부통제 목적의 규정 개정으로 2014 년 5 월에 개최된 제 19 기제 4 차 임시이사회에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고객 개인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고객정보 공유목적 및 이용기간 제한, 대고객 통지 업무 신설, 고객정보 보안 강화, 내부통제 강화, 위반자 제재 강화 취지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 · 평가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은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기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경영진,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월 1 회 소집되는 것을 원칙으로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위험포지션 관리, 관련 법규 및 운용규정 등의 위반사항, 운용성과 분석 및 평가,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의결은 만장일치의 표결에 따르고 위원회의 구성 등 중요한 사항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는 상설 리스크관리팀을 조직 운영 중이며, 리스크관리위원장은 운용성과, 신용사건 등 위원회의 주요한 심의 및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신설 제정하였으며, 동 규범 및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차) 기타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2014 년 1 월 이후 총 9 번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 년도 경영진 성과 평가, 2014 년도 경영진 평가 및 보상체계 확정, 준법감시인 선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 결의한 바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계 동향 및 실적,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감사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와 BNP 파리바의 임직원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당사 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의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의 총원 수는 6인으로 합니다(정관§23). 최소원 수를 6명으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가 구성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한 사외이사가 최소 4명 이상 필요합니다. 이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14 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6 명의 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이외의 4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 3 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2 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 되었는데, 이 중 1 명은 연임되었고 새롭게 1 명의 사외이사 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 재임기간이 5 년으로 제한됩니다(정관 §25). 이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정관에 명시한 자격을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관 §26) 특히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 사외이사 자격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 등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소극적 요건과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리바의 임직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4 년 말 현재 이사는 대표이사 1 명, 상근감사위원 1 명, 사외이사 4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상무,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상무, BNPP IP 이머징마켓 대표, BNPP IP 아시아지역 대표가 각각 사외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4 년 말 기준 이사회 의장으로는 이사회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용병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수행 중이며, 선임 사외이사로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임병철 상무가 이사회 결의 및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구성원

1. 이사회 의장 : 조용병

1) 직위 : 대표이사

2) 구분 : 상임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4) 임기 : 2013.01.01 ~ 2014.12.31 / 연임 2015.01.01 ~ 2016 년 정기 주주총회

※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조용병 대표이사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추천되어,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한금융지주 민정기 부사장을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함

5) 학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1976)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1)

6) 주요 경력 : 신한은행 인사부장 (2002.08)

신한은행 기획부장 (2004.01)

신한은행 강남종합금융센터 센터장 (2006.03)

신한은행 뉴욕지점장 (2007.01)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담당 부행장 (2009.02)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 담당 부행장 (2010.08)

신한은행 리테일부문장 (2011.01)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2013.01 ~ 2015.03)

2. 이사 : 안광명

1) 직위 : 상근감사위원

2) 구분 : 상임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 위원

4) 임기 : 2012.06.21 ~ 2014 년 정기 주총 / 연임 2014.03.20 ~ 2015 년 정기 주총

5)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1974)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1978)

미국 클레아몬트대학 경제학 석사 (1987)

6) 주요 경력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2006.03)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2007.12)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2009.02)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 (2012.06)

3. 이사 : 임병철

1) 직위 : 사외이사

2) 구분 : 비상임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추위 위원

4) 임기 : 2010.06.30 ~ 2014 년 정기 주총 / 연임 2014.03.20 ~ 2015 년 정기 주총

5) 학력 : UC 버클리대학교 경제학 졸업 (1986)

뉴욕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8)

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9)

6) 주요 경력 : 신한은행 FSB 연구소 소장 (2008.03)

신한금융지주 FSB 연구소 상무 (2009.12)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상무 (2013.01)

4. 이사 : 전영교

1) 직위 : 사외이사

2) 구분 : 비상임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 위원, 사추위 위원

4) 임기 : 2014.03.20 ~ 2015 년 정기 주총

5) 학력 :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1981)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89)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2009)
6) 주요 경력 : 신한은행 충무로지점 지점장 (2004.12)
신한금융지주 재무기획팀 팀장 (2006.04)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팀장 (2007.05)
신한은행 재무기획부 부장 (2010.03)
신한금융지주 재무팀 상무 (2014.01)

5. 이사 : 리지아 토레스 (Ligia Torres)

1) 직위 : 사외이사
2) 구분 : 비상임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 -
4) 임기 : 2013.10.11 ~ 2016 년 정기 주총
5) 학력 : Paris Dauphine University Masters in Futures and Options (1982)
6) 주요 경력 :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Head of APAC and Emerging Markets (Present)

6. 이사 : 빈센트 까멜링크 (Vincent Camerlynck)

1) 직위 : 사외이사
2) 구분 : 비상임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 위원, 사추위 위원
4) 임기 : 2013.06.21 ~ 2016 년 정기 주총
5) 학력 : London School of Economics (1986)
6) 주요 경력 :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Head of Asia Pacific (Present)

7. 이사 : 김형진 (연도 중 임기 만료)

1) 직위 : 사외이사

2) 구분 : 비상임

3) 이사회, 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 위원장

4) 임기 : 2013.06.21 ~ 2014.03.20 (임기 만료)

5) 학력 : 경북고등학교 (1977)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1983)

6) 주요 경력 : 신한은행 인사부장 (2004.12)

신한은행 가치혁신본부장 (2007.08)

신한은행 부행장보 (2007.12)

신한은행 부행장 (2009.02)

신한은행 데이터시스템 사장 (2010.12)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3.05)

당사는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임 사외이사(임병철)을 선임하였습니다.

(3) 요약 (2014년 12월 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조용병	상임	대표이사	신한은행 부행장	13.01.01	14.12.31	24 개월	사추위
안광명	상임	상근감사위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12.06.21	15 년 주총	31 개월	감사위
임병철	사외	사외이사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상무	10.06.30	15 년 주총	55 개월	감사위 사추위
전영교	사외	사외이사	신한지주 재무팀 상무	14.03.20	15 년 주총	10 개월	감사위
리지아토레스	사외	사외이사	BNPP IP 이머징마켓 대표	13.10.11	16 년 주총	15 개월	

빈센트까멜링크	사외	사외이사	BNPP IP 아시아 대표	13.06.21	16 년 주총	19 개월	감사위 사추위

※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조용병 대표이사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추천되어,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한금융지주 민정기 부사장을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선임함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4 년에는 총 9 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모든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결의에 필요한 5 명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1% (정기 이사회 96%, 임시 이사회 87%) 입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14 년도 이사회에서 보고 및 의결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9기제1차 임시 이사회

2014년 2월 10일 오후 5시 (안건통지일 2014년 1월 2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김형진	임병철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2013년도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신규 선임 경영진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해당 사항 없음

(나) 제19기제2차 정기 이사회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안건통지일 2014년 3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김형진	임병철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BNPP 출장)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2013년도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제2호 안건 (2013년도 제1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다. 제3호 안건 (2013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 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라. 제4호 안건 (2014년도 경영진 평가 및 보상체계(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마. 제5호 안건 (경영진 평가 및 보수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바. 제6호 안건 (건당 3억원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사. 제7호 안건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아. 제8호 안건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제 1 호.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전망

제 2 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제 3 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내부감사부서 평가결과

제 4 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평가보고

제 5 호. 감사업무 보고

제 6 호.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제 7 호.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제 8 호.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보고

제 9 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다) 제19기제3차 임시 이사회

2014년 3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안건통지일 2014년 3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임병철	전영교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BNPP 출장)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선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제2호 안건 (2014년도 경영진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해당 사항 없음

(라) 제19기제4차 임시 이사회

2014년 5월 21일 오후 5시 (안건통지일 2014년 5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임병철	전영교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BNPP 출장)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해당 사항 없음

(마) 제19기제5차 정기 이사회

2014년 6월 20일 오후 5시 (안건통지일 2014년 6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임병철	전영교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호 의안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제 1 호.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전망

제 2 호.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의결 사항 보고

제 3 호. 감사 업무 보고

제 4 호. 주요 소송 현황 보고

제 5 호.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바) 제19기제6차 정기 이사회

2014년 9월 25일 오후 4시 (안건통지일 2014년 9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임병철	전영교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제 1 호.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전망
제 2 호.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의결 사항 보고
제 3 호. 감사 업무 보고
제 4 호.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제 5 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제 6 호. 브랜드 사용료 재산정 보고

(사) 제19기제7차 정기 이사회

2014년 12월 10일 오후 5시 (안건통지일 2014년 12월 0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임병철	전영교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사업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조직편제 개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호 안건 (3억 이상 경비 집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제 1 호. 업계 동향 및 당사 실적 전망
제 2 호. 감사 업무 보고
제 3 호. 소송 현황 보고
제 4 호. 자금세탁방지 활동 보고
제 5 호.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의결 사항 보고
제 6 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보고
제 7 호.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보고
제 8 호. 사외이사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고

(아) 제19기제8차 임시 이사회

2014년 12월 29일 오후 4시 (안건통지일 2014년 12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임병철	전영교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BNPP 출장)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제19기 임시 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제19기 임시 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해당 사항 없음

(자) 제19기제9차 임시 이사회

2014년 12월 29일 오후 4시 30분 (안건통지일 2014년 12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안광명	임병철	전영교	리지아 토레스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BNPP 출장)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라. 제4호 안건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해당 사항 없음

라. 평가

(1)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기준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의 사외이사 전원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리바의 임직원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의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사외이사, 주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별 평가 주기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이사회규정 §13), 지난 14 년 제 19 기제 7 차 정기 이사회에서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사외이사 평가 제도 도입의 건을 보고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후 2015 년 3 월 2 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설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참여도 등의 활동 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의 항목으로 합리적인 기준의 평가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 3 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필요시 수시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여 관련 법령 및 모범 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후보군 관리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외이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에서 신설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인 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사외이사운영규정에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 년 12 월 24 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 및 적극적 요건을 반영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 년 3 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신설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신설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 운영규정은 폐지). 동 규범 및 규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주요 주주 또는 외부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2 회 예비 후보자를 탐색하여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 요건 외 독립성, 직무공정성,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2015 년 3 월 2 일 신규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합리적인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2015 년 중 수립하여 매년 사외이사 내부평가를 실시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 받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재선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 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서는 외부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외이사 후보군과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다.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구성 / 2014년 12월 말 기준>

성명	구분	직위 등	최근 선임일[주1)]	임기만료일

조용병[주2)]	상임이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2014.12.29	16년 정기 주총
임병철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4.06.20	15년 정기 주총
빈센트 까멜링크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3.10.11	16년 정기 주총

주1) 이사회 결의일자

주2)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은행장으로 추천 (2015년 3월 2일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민정기 신임 대표이사 선임)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2014 년 총 1 차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2014 년 3 월 제 1 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 년 2 명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가 도래하고 이에 1 명은 재선임, 1 명은 신규 선임 되었는데, 2 명 모두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임직원으로서 자회사인 신한 BNP 파리바산운용㈜의 경영 효율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 받은 후보 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9기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4년 3월 20일 오전 9시 50분 (안건통지일 2014년 3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용병	임병철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BNPP 출장)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주)	-	가결

주) 사외이사 본인의 후보 추천건으로 가부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비고>

1. 보고안건 : 해당 사항 없음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사외이사 후보 임병철과 전영교는 2014 년 3 월 20 일 제 1 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외이사 후보로서 사외이사 후보 임병철은 2010 년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동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이후 2014 년 3 월 20 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 성명

임병철, 전영교

(나) 후보자의 인적 사항주)

구분	후보자 1	후보자 2
성명	임병철	전영교
출생연도	1964	1962
출신학교	Arcadia High School UC버클리대학교 경제학 학사	덕수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뉴욕대학교 경제학 석사 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신한은행 FSB연구소(2008) 신한지주 FSB연구소(2009)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2013)	신한지주 재무팀(2006) 신한은행 재무기획(2010) 신한지주 재무팀(2014)

주) 후보자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임직원으로서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겸직 신고를 거쳐 선임

(다) 후보제안자 (2014년 12월 말 기준)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조용병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신한은행 인사부장 (2002.08)

신한은행 기획부장 (2004.01)

신한은행 강남종합금융센터 센터장 (2006.03)

신한은행 뉴욕지점장 (2007.01)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담당 부행장 (2009.02)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 담당 부행장 (2010.08)

신한은행 리테일부문장 (2011.01)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2013.01 ~ 2015.03)

② 후보자와의 관계

임병철, 전영교 사외이사 후보자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현직 임직원입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구분	후보자 1	후보자 2
성명	임병철	전영교
추천이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실장, 자산운용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금융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었으며, 그간 사외이사로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은행의 기획팀장 및 재무팀장 그리고 지주회사의 재무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부터 신한금융지주에서 재무담당 상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활발한 이사회 활동이 기대되어 추천	집합투자업자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의 사외이사에 요구되는 능력과 경험을 겸비하여 추천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임병철, 전영교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현직 임직원으로 전문성, 향후 활동 가능성, 자회사 경영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당사 사외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마) 금융회사 등과 관계

임병철, 전영교 사외이사 후보자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현직 임직원입니다.

(바) 자격충족 여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신규 제정하였으며 동 규범에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① 소극적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 §25, §45 및 금융지주회사법 §39

② 적극적 요건

(구)금융투자회사 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2-3

신한금융지주 임직원으로서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 만족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와 BNP 파리바의 현직 임직원으로서 자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경영 효율성 강화, 직무 전문성 등을 보유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및 자격요건 검토 보고서

2014년 12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평가 기준 도입에 대한 보고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2015년 3월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극적으로 따른 지배구조 모범규범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중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사외이사를 활동 내역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재선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연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4년 3월 20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출석위원 2명 중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2014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명이며 이중 1명이 연임하였으며 내/외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율	평가 여부
임병철	2010.06.30~ 2015년 주총	연임	100%	-
김형진	2013.06.21~ 2014년 주총	-	100%	-

※ 임기가 도래한 2인의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현직 임직원임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다음의 추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추천된 후보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신설 제정되었고 이와 함께 기존 사외이사운영규정은 폐지 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50(다만, 관련법령에서 더 낮은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542조의6제8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회사에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주주사인 모회사와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자회사 경영관리에 적임자인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는 2015년 3월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신설하여 향후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내역을 매년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사외이사 후보추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현재까지는 보고한 내용이 없으나, 2015년 3월 2일 신설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근거로 향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 및 프로세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현재까지는 보고한 내용이 없으나, 2015년 3월 2일 신설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근거로 경영관리담당 부서가 주도하여 향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 및 프로세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4. 대표이사 경영승계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계획 등 그룹내 자회사 지배구조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 년 5 월 10 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 년 12 월 24 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 년 2 월 24 일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사항 등입니다.

<붙임>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2004. 5. 10 제정
2005. 6.29 개정(1)
2009.11.12 개정(2)
2010. 2.26 개정(3)
2011.2.8 개정(4)
2011.2.21 개정(5)
2015.2.26 개정(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0.2.26 시행)

②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제외한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회사의 이사아닌 경영진 중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제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4.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단, 신한캐피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의 전일까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정정할 수 있다.

제6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제7조(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검증)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½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 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제6조 및 제7조는 자회사 중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신한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나.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신한금융지주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해 경영 연속성 확보 및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1년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동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동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동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면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시점 자회사 CEO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경영승계절차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고, 당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⑥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한금융지주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당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신한금융지주는 당사의 대표이사 조용병 사장의 임기가 201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2월 29일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법규상 결격요건, 자격요건 및 업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조용병 사장을 2015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중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29일 당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4.12.29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결의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12.29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결의	제19기 임시 주주총회 제19기제9차 임시이사회

라. 대표이사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
평가 : 당사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동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동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동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사장을 2014년 12월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자격요건 :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 2014년 12월 29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조용병 후보자는 1984년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에 입행하여 2002년부터 인사부장, 기획부장, 강남종합금융센터 센터장, 뉴욕지점장,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리테일 부문장 등의 직을 거쳤으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당사의 CEO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를 거치는 동안 기업문화 혁신 주도, 직원간 소통 강화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등 업무 수행의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조용병 후보자는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당사의 CEO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조용병 후보자는 경영진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외부에서, 탁월한 리더십,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조용병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건강상태 등을 검증하고 2014년 12월 29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대표이사 후보군 관련 지침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 6 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 1 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및 최종 후보자 추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신한금융지주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4 년 5 월 22 일 개최된 제 4 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총 15 명의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 2 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신한금융지주 HR 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추천 경로
내부	15명	2014년 5월 22일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바.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HR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R팀은 팀장과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핵심인재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R팀은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HR팀은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HR팀
- 직원수 : 총 6명
- 운영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4.2.4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2.25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3.18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5.22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및 평가, 개발계획(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8.21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10.8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12.29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5.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신한금융지주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신한금융지주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로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와 검증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대표이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당사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2015년 3월 2일 당사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규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2014년도에 총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후보군 선정 및 평가, 개발계획 심의에 대한 검토 및 결의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 신한금융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 해당 그룹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3명의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2014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4년 중 기존 위원이었던 윤계섭 위원은 3월26일에 임기가 종료되어, 동일자에 사외이사인 김기영 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4년 중 재임하였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한동우	상임이사	위원장, 대표이사 회장	2014.3.26	2015. 주총시까지
김기영	사외이사	위원	2014.3.26	2015. 주총시까지
김석원	사외이사	위원	2014.3.26	2015. 주총시까지
이상경	사외이사	위원	2014.3.26	2015. 주총시까지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도에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10개의 결의 안건으로, 10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4년 5월에 개최된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15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신한금융투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 해당 그룹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4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2월 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윤계섭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4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2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윤계섭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4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3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윤계섭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4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5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기영	김석원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장 선임
나. 2호안건 (자회사 경영진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육성후보 선정
라. 4호안건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4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8월 2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기영	김석원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4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10월 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기영	김석원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4년도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4년 12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기영	김석원	이상경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대표이사 후보 추천 관련사항

(1) 후보자 성명 : 조용병

(2)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57 년

② 출신학교 :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③ 경력

- 2000.12 신한은행 세종로지점장
- 2002.08 신한은행 인사부장
- 2004.01 신한은행 기획부장
- 2006.03 신한은행 강남종합금융센터 센터장
- 2007.01 신한은행 뉴욕지점장
- 2009.02 신한은행 전무
- 2011.01 신한은행 부행장
- 2013.01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사장

(3) 후보 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해당 사항 없음

②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

(4) 후보자 추천 사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2014년 12월 29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조용병 후보자는 1984년 신한금융

그룹 신한은행에 입행하여 2002년부터 인사부장, 기획부장, 강남종합금융센터 센터장, 뉴욕지점장,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리테일 부문장 등의 직을 거쳤으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당사의 CEO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를 거치는 동안 기업문화 혁신 주도, 직원간 소통 강화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등 업무 수행의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조용병 후보자는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당사의 CEO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조용병 후보자는 경영진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외부에서, 탁월한 리더십,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조용병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건강상태 등을 검증하고 2014년 12월 29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신한금융지주는 대표이사 조용병 사장의 임기가 2014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2월 29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법규상 결격요건, 자격요건 및 업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조용병 사장을 2015년 결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중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5)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조용병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 추천을 위해 2014년 12월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법규상 결격요건, 자격요건 및 업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조용병 사장을 만장일치로 2015년 결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중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동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회사 정보 요구권, 관계자 출석 및 답변 요구, 실사, 징계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리스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는 경영진 등에 대한 보상은 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였으며, 2015 년 3 월 2 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규 제정된 보상위원회를 통해 추후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정관§32-3).

이에 따라 '14 년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에 부의될 재무재표 등에 대하여 이사회로부터 제출받아 '14.3.19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감사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의 감사위원회는 업무 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412)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402).

이에 따라 2014 년도 중 고유재산 시재 및 재무감사, 준법, 업무, 경영, IT 감사등 일상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각 해당 담당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외감법 §4). 당사는 201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룹결산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위원회는 14년 3월에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전문성 및 대외공신력 그리고 그룹 결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상감사 등을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16) 또한 감사인은 매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근감사위원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15).

-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세부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 기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7)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 합니다. (외감법 §2)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감사부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으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감사위원회 직무규정§15, 감사위원회 규정 §17)

이에 따라 감사인(감사부서장)은 상근감사위원과 함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를 포함한 세부감사실시 내역 및 감사결과, 내부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 총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의 결의로 신규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도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감사위원의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임병철	사외이사	감사위원장(현)	2010.06.30	2015 정기주총
안광명	상임	상근감사위원	2012.06.21	2015 정기주총
전영교	사외이사	-	2014.03.20	2015 정기주총
빈센트 까멜링크	사외이사	-	2013.06.21	2016 정기주총
김형진(퇴임)	사외이사	감사위원장(전)	2013.06.21	2014.03.20

(3)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

해당 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2조의 2에 따라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위원은 정관 제24조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로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 활동 내역 및 평가

(1) 활동 내역 개요

2014년에는 모든 감사위원의 활발한 참여 하에 총 4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고 받고 점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최 전 의안을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위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해 5건의 부의 안건을 가결하고, 14건의 보고 안건을 검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4년 03월 19일 (안건통지일 2014년 03월 1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김형진	안광명	임병철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평가 결과	-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	-	-	-	-	
4) 감사업무 보고	-	-	-	-	
5) 컴플라이언스 보고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감사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호 안건 (2014년 감사계획)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4호 안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4년 06월 20일 (안건통지일 2014년 06월 1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임병철	안광명	전영교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감사업무 보고	-	-	-	-	
2)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 결과 통보	-	-	-	-	

	3) 컴플라이언스 보고	-	-	-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4년 09월 25일 (안건통지일 2014년 09월 1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임병철	안광명	전영교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감사업무 보고	-	-	-	-	
3) 컴플라이언스 보고	-	-	-	-	

2014년 12월 10일 (안건통지일 2014년 12월 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감사위원 성명	임병철	안광명	전영교	빈센트 까멜링크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 금감원 감사수검 내용 보고	-	-	-	-	
2) 감사업무 보고	-	-	-	-	
3)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 결과 보고	-	-	-	-	
4) 컴플라이언스 보고	-	-	-	-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팀이 있으며 14년 12월 말 기준으로 감사부서장(팀장) 외 1인의 감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4.03.19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계획의 수립,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재무 및 업무감사, 일상감사 등
2014.06.20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회계감사 결과, 재무 및 업무감사, 일상감사 등
2014.09.25	감사위원회	재무 및 업무감사, 일상감사 등
2014.12.10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회계감사 결과, 재무 및 수시, 일상감사 등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는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 운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 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보상위원회 규정을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30일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고 해당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 등을 정의하고 변동 보상자를 결정하는 등 보상위원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 이사회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상위원회 기본 원칙

-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상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 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과도한 변동보상 지급으로 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성과 연계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임직원의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 세부적인 사항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보상위원회의 주요 결의 사항

- 신한금융지주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
- 신한금융지주 보상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9조제3항제2호의 연차보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성(보상위원회 위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에서 신규 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서 3인의 이사를 위원으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인 2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민정기	대표이사	X	O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현)
전영교	사외이사	O	O	신한금융지주 재무담당 상무(현)
빈센트 까멜링크	사외이사	O	O	BNPP IP 아시아 대표(현)

* 2015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임시 이사회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을 상기와 같이 신규 선임을 하였습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2015년 회계연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 까지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상위원회 활동 전반 및 결의 내용은 차기 연차보고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보상위원회는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에서 신규 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 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보상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 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신설 이후 설치되어 2014년에는 별도의 자문 내역은 없습니다.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5년에 신설된 보상위원회 결의 내용은 차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 현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크관리부서(리스크관리팀)

- 소속 : CEO 직속
- 2014년 12월 말 기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 업무 9년 이상 경력의 팀장을 포함하여, 평균 업무 근속년수는 약 8년 입니다.

- 준법감시부서(컴플라이언스팀)
  - 소속 : CEO 직속
  - 2014년 12월 말 기준 총 5명(변호사 1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업무 11년 이상 경력의 팀장을 포함하여, 평균 업무 근속년수는 약 5년 입니다.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전사 리스크관리 조직인 리스크관리팀과 컴플라이언스팀 직원들의 경우 업무 성과 목표 설정시 회사 영업과는 독립적으로 고유 직무에 대한 달성도를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일반 직원의 보상 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ESOP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직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는 일반 직원의 경우 그 직무 가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일 신규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2015년 3월 30일 보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라. 보상 체계의 주요 특성

2015년 3월 보상위원회 규정 신설 및 보상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룹 차원에서 경영진 등의 변동보상에 대해 다양한 리스크 지표를 포함한 회사의 성과에 연동하여 보상규모가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및 자회사 평가에 반영되는 주요한 리스크 관련 지표는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은 그룹 차원에서 회사의 규모 및 담당 업무에 따라 그룹 KPI, 회사 KPI, 담당업무 KPI, 담당업무 전략과제가 일정 비율로 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그룹, 회사, 담당업무의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인 평가요소가 모두 성과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보상은 연간 성과급 등이 있는데, 연간성과급은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 확정 후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및 경영진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위해 당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2014년 변동 보상 발생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이연보상액, 보장성 상여금,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등은 지급한 바 없습니다. 추후 발생 분은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보상의 구분

구분 (단위 : 명, 억원)		수급자수주 1)	고정보상액주 2)	변동보상액주 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3 년)	경영진	4	8.3	6.9	0
당해년도 (2014 년)	경영진	4	9.4	5.8	0

주 1) 해당년도중 6 개월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 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으로 분류
* 당사의 특정업무 종사자 및 변동보상 대상자는 경영진운영규정의 경영진으로 하며, 추후 이외 직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업무 종사자 및 변동보상 대상자 포함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임직원 총보수 형태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A/C)
			비율(A/B)		
전년도 (2013 년)	20,677,304,193	41,196,833,711	0.50	210	98,463,353
당해년도 (2014 년)	21,598,504,798	29,891,451,468	0.72	214	100,927,593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 기의 금액을 기재한다.[예시 : 당해연도가 2014 년인 경우 2013 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주 3) 2014 년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2013 년 회계연도부터 결산월 변경에 따라 9 개월치만 순이익만 반영
주 4) 임직원수는 관할 세무서 근로소득 신고 기준

8. 위험관리위원회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는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 기본 정책 등 주요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로 별도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의 사외이사 전원은 모두 주주사 소속 임직원입니다.

(1) 사외이사 임병철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사 소속 임직원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충실

(2) 사외이사 전영교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사 소속 임직원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충실

(3) 사외이사 리지아 토레스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사 소속 임직원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충실

(4) 사외이사 빈센트 까멜링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사 소속 임직원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충실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사외이사 전원은 모두 주주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사외이사 활동을 통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규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도 신한금융지주 및 제휴 파트너인 BNPP 임직원인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시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임병철	9	9	4	4	1	1	100%
전영교	7	7	4	4	-	-	100%
리지아토레스	9	7	0	0	-	-	78%
빈센트카멜링크	9	6	4	4	1	0	71%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BNP 파리바의 현직 임직원으로서 해당 사외이사는 당사 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업무 미팅, 워크샵, 주주총회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외이사 및 주주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기부금 등 지원 내역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BNP 파리바의 현직 임직원으로서 별도로 기부금을 지원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를 포함한 모든 자회사(12 개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 3 자(종업원,소비자,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 2014.4.~2015.3

(4) 보상한도 : 그룹 총 보상한도 500 억원 (청구당/자회사별)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다만,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를 포함한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제주은행의 이사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규율하는 사외이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사외이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2015.2.24 개최된 제 2 회 임시이사회에서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동 규범 제 27 조제 6 항에 동 내용을 적시)
상기한 임원책임배상보험 만기가 도래하는 2015.4 다음과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임원책임배상 보험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특약 신설 : 피보험회사 중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의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 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바. 사외이사 평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외이사 전원은 주주인 신한금융지주, BNP 파리바의 현직 임직원으로서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5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참여도 등에 대해 매년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BNP의 관련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2014년 12월 제19기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규 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는 이사회를 통해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고 평가 기준을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평가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매년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 내역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 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이나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2) 사외이사 지원 부서의 활동내역

(가) 지원부서 현황

경영관리 담당 부서 (경영기획실 실장 1명, 실원 10명)

(나) 지원부서 수행 업무

선임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요청 사항 등은 경영기획실에서 정확한 자료를 생성하여 적시에 전달 지원 하였습니다.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연도	사외이사 총수	신규 선임 이사 수	퇴임 사외이사 수
14년	4명	1명 (전영교)	1명 (김형진)
13년	4명	3명 (김형진,리지아토레스,빈센트까멜링크)	3명 (최범수,장오디베르,스튜어트에드가)
12년	4명	-	-
11년	4명	1명 (장 오디베르)	-
10년	3명	3명 (스튜어트에드가, 임병철, 조의용)	3명 (조의용, 이효일, 이삼용)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각 년도별 사외이사는 당시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BNP파리바의 현직 임직원 입니다.

10. 주주총회

가. 주주현황

성 명	주 소	소유주식수 (보통주)	지분비율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9,798,586**	**65%**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	**5 avenue Kléber, 75016 Paris France**	**5,276,161**	**35%**
합 계		**15,074,747**	**100%**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구분	2012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2년 2월 24일				
소집 공고일	2012년 2월 24일				
개최일자	2012년 2월 24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1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이사 보수 한도 결정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2호. 정관 개정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2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2년 6월 21일

소집 공고일	2012년 6월 21일				
개최일자	2012년 6월 21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1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11년 재무제표 승인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2호. 정관 개정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3호. 이사 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2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2년 9월 18일				
소집 공고일	2012년 9월 18일				
개최일자	2012년 9월 18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1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홍콩현지법인 증자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2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2년 12월 27일
소집 공고일	2012년 12월 27일
개최일자	2012년 12월 27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1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이사 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3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3년 3월 20일				
소집 공고일	2013년 3월 20일				
개최일자	2013년 3월 20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3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이사 보수 한도 결정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3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3년 6월 21일				
소집 공고일	2013년 6월 21일				
개최일자	2013년 6월 21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2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이사 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2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3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3년 6월 21일				
소집 공고일	2013년 6월 21일				
개최일자	2013년 6월 21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2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12년 재무제표 승인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2호. 펀드슈퍼마켓 출자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3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3년 10월 11일				
소집 공고일	2013년 10월 11일				
개최일자	2013년 10월 11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1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이사 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4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4년 3월 20일

소집 공고일	2014년 3월 20일				
개최일자	2014년 3월 20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6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13년 재무제표 승인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2호. 외부감사인 변경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3호. 이사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5호. 이사 보수 한도 결정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구분	2014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2014년 12월 29일				
소집 공고일	2014년 12월 29일				
개최일자	2014년 12월 29일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이사 참석 여부	참석				
소요시간	20분				
영문 소집 등	외국인 사외이사(주주 대리인) 안내 목적 영문 소집				
주주총회 비용	-				
의안	결의 유형	출석주식수	찬성비율	반대비율	의결권 행사방법
제1호. 이사 선임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제2호. 사업계획 승인	보통결의	15,074,747	100%	-	대리행사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첨부 1.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정관

정 관

개 정 : [2009. 1. 02]
개 정 : [2009. 6. 12]
개 정 : [2010. 6. 30]
개 정 : [2012. 4. 15]
개 정 : [2012. 6.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신한비엔피파리바 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사업의 목적)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자문업무
2. 투자일임업무
3. 투자매매업무(인수업 포함)
4. 투자중개업무
5. 집합투자업무
6. 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회사는 인·허가권자의 인·허가를 얻어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위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② 관련법률 또는 본 정관에 따라 직접 행하거나 발송을 요하는 (공고 이외) 모든 통지와 보고는 우편 또는 선납등기우편, 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영문으로 행하되 국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육백만(36,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6,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일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일십만(100,000) 주권의 9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기타 단위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회사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신주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리의 행사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명의개서 등)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규에 의한다.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일의 익일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동의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4 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대한민국의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주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로 동의하는 경우 위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제 17 조 (소집지) 주주총회의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회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외의 장소를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정족수 및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의 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1. 회사 영업의 범위나 성격의 변경, 신규 영업의 추가
2. 회사의 정관의 변경
3. 회사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4. 제3자와의 중요한 합작, 제휴 또는 제3자에 대한 기술적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5. 통상적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계약 체결 또는 업무의 집행
6. 십억원을 초과하는 자산 또는 영업의 취득 또는 처분
7. 십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
8. 총금액이 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입 (여하한 형식의

자금조달)

9. 회사의 연간 예산(핵심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 급여, 상여금 포함) 및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10. 당해연도 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주석, 보고서 등을 포함한 법령상 요구되는 기타 재무제표의 승인
11. 배당정책의 수립 및 변경, 이익배당 및 이익분배의 승인 및 지급
12. 회사와 BNP Paribas 그룹 또는 신한금융그룹 사이의 중요한 거래, 계약 및 그 중요한 변경
13. 외부감사인의 선임이나 교체
14. 신주의 발행
15. 합병
16. 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점의 설치
17.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승인
18. 기존에 존재했거나 새로 체결되는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 또는 그에 관한 중대한 변경
19. 분쟁금액이 십억원을 초과하는 제3자가 연관된 법적 소송이나 중재, 행정적 또는 규제적인 절차의 개시, 협상, 화해; 또는 정부 당국과 관련된 위 절차들(이는 분쟁금액 액수에 관계없음)의 개시, 협상, 화해
20.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21.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 22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제 23 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6인으로 한다.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사의 수 이상의 홀수의 수로 한다. ('09.06.12 개정)

② 사외이사는 전체이사수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 등의 사유로 본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21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신설)

② 전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
2.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제 27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신규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8 조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29 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의 10영업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모든 이사의 (우편, 팩시밀리, 텔렉스, 전자우편 또는 케이블에 의한) 서면동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시기와 장소는 대표이사가 정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화상회의를 포함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주요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그 결의로 다른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법령 및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2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는 4 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09.06.12 개정)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제 1 항에 정한 요건에 합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다.

제 32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역할)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선임에 대하여 승인하고 그 사실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2 조의 4 (결의방법) ① 감사위원회는 감시위원 4/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6명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6명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36 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7 조 (부회장 등) 회사는 부회장,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 38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9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회사는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서 공표한)에 따라 조정한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는 이러한 회계장부, 기록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차기이월액
6.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1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가 결의하는 경우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단. 주식에 의한 배당에 관련된 주식의 총액면가는 당해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2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사업연도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3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6 장 보 칙

제 44 조 (규 정)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중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45 조 (상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관련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과『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46 조 (언 어) 본 정관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동등한 정본으로 한다. 단, 의미의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 칙 ([2009. 1. 2.])

1. (시행일) 본 정관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조의 규정은 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단위에 대한 등록 및 인가가 발효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는 본 개정 전 정관(2005. 6. 30.자 신한 비엔피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것)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8조의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본 정관은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신설됨에 따라 2015년 3월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첨부 2.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규정

이사회 규정

제정 2009.01.02

개정 2009.06.12

개정 2010.06.30

개정 2012.06.21

개정 2012.12.18

개정 2014.0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이하 "이사인 경영진"이라 한다)와 이사 아닌 자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한 자로서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하"이사 아닌 경영진"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이사회의 역할)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 한다.

② 이사회는 회사경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선임사외이사의 역할)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①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②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7조(이사의 권한 및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성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제9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이사회의 소집 및 소집권자)

①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권자가 소집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집한다.

② 제1항의 소집권자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는 그 이사로 한다.

제11조(소집통지)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우편, 팩시밀리 전송, 전자메일 등 송수신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사회 개최일 10일 전에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배부)

① 이사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최소 **7**영업일전에 전 이사에게 배부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최소 **7**영업일전에 위원회 각 구성원 및 기타 위원회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의안의 배부 방식은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 송신, 전자메일 송신 등 송수신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A.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B. 주주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A.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B.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C.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퇴직위로금규정, 내부통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사외이사운영규정
3.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A. 신주의 발행
   B.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 전입
   C.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에 관한 사항
4. 경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
   A. 경영의 기본 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B.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C. 경영진의 평가지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D.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 점포의 이전 및 폐쇄
   F. 자본시장법상의 신규사업에의 진출
   G. 이사 아닌 경영진의 임면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H.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I. 위원회의 설치, 개폐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A. 업무용 동산, 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B. 1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단,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C. 1건당 3억원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

D. 기타 중요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

A. 사외이사의 평가방법 및 평가별 평가주기

B. 사외이사의 활동시간

7. 기타 사항

A.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차입

B.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C. 주주총회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D.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E. 사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F.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② 대표이사 사장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그 실적분석
3.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경영성과, 분석 및 현황
5. 기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한 심의 및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6명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 6명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하며 당해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가 행하는 심의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자의 출석)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경비)

이사회의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이사회 규정은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신설됨에 따라 2015년 3월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첨부 3.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4.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등

제 4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녹취, 물품 등에 대한 실사 및 봉인 요구
4. 거래처에 대한 회계관계 제반자료 요구
5.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고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8 조 (선임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유고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009.6.12 개정)
④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이를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2009.6.12 개정)
② 상근감사위원이 제 1 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2009.6.12 신설)
② 제 16 조의 위임사항 및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이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2009.6.12 개정)
③ 일상 감사대상 이외의 문서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2009.6.12 개정)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 3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감사위원 4/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009.6.12 개정)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009.6.12 개정)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2012.6.21 개정)
④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주요안건) 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마.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 실시와 관련한 위임 사항
다.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승인
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사.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아.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자.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차.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카.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4. 기타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6 조 (감사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6.12 개정)

1.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세부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 업무 통할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조 (준법감시인관련 사항) ① 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1.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2. 기타 관계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 상근감사위원은 제 16 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6.12 개정)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9 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감사보조조직)
① 회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 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둔다.
② 감사부서는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③ 감사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1 조 (감사업무 외부위탁시의 특칙)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

제 22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감사위원회 규정은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신설됨에 따라 2015년 3월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첨부 4.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규정

개정 2009. 01.02

개정 2010. 06.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제 5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제8조의 결의방법에 의해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7**영업일 이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50(다만, 관련법령에서 더 낮은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542조의6제8항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회사에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 9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본인을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당해위원은 해당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사외이사후보의 자격) 사외이사후보의 자격은 사외이사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 12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3 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정)

제 15 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6 조 (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정, 변경 등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4항은 사외이사 운영규정에 의해 평가받은 사외이사의 연임시에 대해 적용한다.

※ 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2015년 3월 2일 임시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신설됨에 따라 2015년 3월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